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을 산 과 학 기 술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19.2.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과학기술원의 동일·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여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1)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반복 가능성이 낮아 가중제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자제하도록 규정함
- 2)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
- 3)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위반행위별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감경 기준을 간소화하여 규정함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감액 기준 간소화가 필요함

-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함
- 3)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연 락 처	(044) 202 - 4835